

제28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 공연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립중앙극장장

1 시험개요

내용	필기시험	실기시험
분야·급수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각 1, 2, 3급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각 1, 2, 3급
원서접수	4.27.(월) 09:00~5.1.(금) 18:00	6.22.(월) 09:00~6.26.(금) 18:00
수수료 면제자/임신부 증빙서류 제출	4.27.(월) 09:00~5.1.(금) 18:00	6.22.(월) 09:00~6.26.(금) 18:00
수수료	13,000원(전자결제)	15,000원(전자결제)
취소 및 환불	<100% 환불> 4.27.(월) 09:00~5.1.(금) 18:00 <50% 환불> 5.1.(금) 18:00~5.20.(수) 18:00	<100% 환불> 6.22.(월) 09:00~6.26.(금) 18:00 <50% 환불> 6.26.(금) 18:00~7.17.(금) 18:00
수험표 발급일	홈페이지 공지	홈페이지 공지
시험시행	5.31.(일) / 10:20~12:00 * 09:40 까지 입실	무대조명: 7.28.(화)~ 7.30.(목) 무대음향: 8.3.(월) ~ 8.5.(수) 무대기계: 8.11.(화)~ 8.13.(목) * 09:20 까지 입실
시험장소	추후 공지 및 배정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등
준비물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 수험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6.19.(금)~6.26.(금) (제28회 3급 필기 합격자에 해당)	-
합격자발표	6.19.(금) / 10:00	8.26.(수) / 10:00

2 응시기준

□ 필기시험 대상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공연법 시행령10조의5, 별표2)

구분	응시기준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비고	1. 졸업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졸업예정자: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07년 1월 1일 이전 경력인정자의 등급별 응시기준 (부칙 제19798호 제2항)

구분	교육과정 이수자	교육과정 미이수자
1급	1.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2급 자격증 소지자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2급 자격증 소지자
2급	1.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격증 소지자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격증 소지자
3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비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외국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무대예술 또는 기계·전기·건축 등 관련분야를 이수한 경우 그 이수기간의 2분의 1을 해당분야 실무경력에 산입한다.	

□ 실기시험 대상

○ 제28회(2026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

○ 제26회(2024년), 제27회(2025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

3 원서접수 방법

□ 접수방법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후 원서접수 페이지 이동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사진은 규격(3.5cm×4.5cm), 그림파일(JPG)로 첨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정면응시 상반신 컬러사진(무배경)**만 사용 가능
- 흑백사진, 측면사진, 배경이 나타나는 사진, 모자 착용 사진, 기타 얼굴인식 안되는 사진, 규격 부적합 사진 불가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개인정보 기재사항 수정 가능,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응시 수수료

- (응시료) 필기시험 13,000원/ 실기시험 15,000원
- (납부 방법) 전자결제
*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납부 권장
- (응시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관련 증빙서류를 원서접수(필기/실기) 기간 내에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 원서 접수일 현재 해당되는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효력 발생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선정일자/발급기간 명시) 제출

□ 응시 수수료 환불

- 필기시험
 - (100% 환불) 4.27.(월) 09:00~5.1.(금) 18:00
 - (50% 환불) 5.1.(금) 18:00~5.20.(수) 18:00
- 실기시험
 - (100% 환불) 6.22.(월) 09:00~6.26.(금) 18:00
 - (50% 환불) 6.26.(금) 18:00~7.17.(금) 18:00

○ 사후 환불처리

- 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후 수수료의 50% 환불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
-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입원(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의 확인서 첨부)
-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중대장 이상 발급 확인서 첨부)
- 검정기관의 부서장이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천재지변으로 결정한 경우

○ (환불신청 방법) stagestaff@korea.kr 이메일 접수(신청서 제출)

○ (환불시기)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 반환

4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 (필기시험) 객관식 4지 선다형

구 분	공통과목			전공과목			합격결정 기준
	시험과목	배점	과락	시험과목	배점	과락	
무대기계 전문인	1급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	20	8	무대기계 I, II, III	80	32
	2급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	30	12	무대기계 I, II	70	28
	3급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	40	16	무대기계 I	60	24
무대조명 전문인	1급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	20	8	무대조명 I, II, III	80	32
	2급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	30	12	무대조명 I, II	70	28
	3급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	40	16	무대조명 I	60	24
무대음향 전문인	1급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	20	8	무대음향 I, II, III	80	32
	2급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	30	12	무대음향 I, II	70	28
	3급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	40	16	무대음향 I	60	24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의 합계가 60점 이상

* 과목별 과락 기준에 따른 과락 점수 미만일 경우 불합격

□ (실기시험) 작업형 또는 기입형과 혼용

구분		시험과목	배점	합격결정 기준
무대기계 전문인	1급	무대기계 I,II,III	100	60
	2급	무대기계 I,II	100	60
	3급	무대기계 I	100	60
무대조명 전문인	1급	무대조명 I,II,III	100	60
	2급	무대조명 I,II	100	60
	3급	무대조명 I	100	60
무대음향 전문인	1급	무대음향 I,II,III	100	60
	2급	무대음향 I,II	100	60
	3급	무대음향 I	100	60

* 실기시험의 중점 평가사항

- 해당 응시분야의 전문기술 수행능력 평가
- 장치 및 설비의 운영 조작능력
- 실기시험 문제에 대한 판독능력 및 대처능력
- 장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장비 및 장비 운용상의 문제 해결능력

□ 기타 안내

- 시험과목 중 전공과목의 로마숫자(I,II,III)는 난이도를 의미
- 문제출제는 자격검정 표준교재 이외의 기타 참고 도서에서도 출제 가능
- 출제되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함

5 응시자격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제출기간) 6.19.(금)~6.26.(금)/ 09:00~18:00
- (접수방법) 등기우편/방문 접수 * 6.26.(금)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 (접수처)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우)04621
국립극장 무대예술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 제출대상자 및 제출서류

- (대상자) 제28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필기시험 3급 합격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
 - * 실기시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 취소됨
- (제출서류) 응시자격서류 신청서 1부, 증빙서류(원본) 1부

○ (증빙서류) 하단 내용 참조

-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3급 시험에 응시한 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증명서, 국내 대학교(대학원) 졸업(재학)증명서,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등 제출

*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외국인 포함)

⇒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① 졸업증명서 원본과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②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자격으로 3급 시험에 응시한 자

⇒ 해당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 지정교육기관 이수자(2006년 입학자까지만 해당)

⇒ 지정교육기관 수료증 제출

* 지정교육기관 : 계원조형예술대학 공간예술학과/ 전남과학대학 모델이벤트학과/
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과/ 무대예술아카데미 무대미술, 무대조명, 무대음향

- 단기과정 150시간 이수자(2006년도까지 재직기간 중 150시간 이수자만 해당)

⇒ 단기교육과정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제출

□ 유의사항

○ 응시자격서류 제출 시 필기시험 합격 자격이 유지되며, 당해 연도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별도 접수하여야 함**

○ 제출기간 동안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응시자격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적발된 자는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이 경우 실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더라도 응시 수수료 환불 불가

6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6.19.(금) 10:00/ ○(실기시험) 8.26.(수) 10:00

○(결과확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홈페이지 * 추후 별도공지

7 유의사항

□ 부정행위 관련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공연법 제14조의 2 규정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자격검정 응시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합격자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 결격사유가 발견 될 때에는 해당 합격사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주요 사례>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에 문제 내용을 보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소지하는 행위
- 시험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고사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

□ 기타안내

- 응시원서의 허위작성·위변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가져올 경우에 발생하는 주차공간 확보, 주차료 지불 및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자격검정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위원회를 비롯한 저작권자들에게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기출문제 무단 사용 및 출판 등)를 금합니다.

□ 수험생 유의사항

- [붙임]의 “수험생 유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I. 필기시험 유의사항

□ (수험생 필수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 수험표 출력: 홈페이지 공지
-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구)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
 - * 만18세 이하 학생일 경우에만 학생증(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 된 것) 허용
- 허용 모바일 신분증

구분	모바일 신분증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	○	○	○	○	○	○
모바일 운전면허증	○	○	○	○	○	○	○

- 필기구: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미개봉 신품 사용 권장)
 -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 후 기간 경과로 인한 불량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표기 상태로 인한 득점 불인정 등)는 수험생 본인의 귀책 사유입니다.

□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실 입실 이후 “수험생 교육, 본인확인” 등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9시 40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 필요한 수험표, 신분증,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은 개인 지참 후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생은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아날로그(전자식 화면표시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만 사용 가능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시계, 데이터 저장,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사용 불가)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화장실 이용 후에는 재입실이 불가합니다. *단, 임신부 허용 (사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임신부의 경우 화장실 이용 제한이 없으며,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기간에 사전 제출 할 경우에만 인정 됨(시험 당일 증빙자료 제출 시 적용 불가)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증빙서류 제출 기한에 맞춰 제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의 소견서 1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54호)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1부

- 조기퇴실은 11:30 이후 답안지 제출 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서 가능하며, 퇴실 시 타 수험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한 채 시험장(학교)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이후에는 재입실 불가)
- 필기구를 비롯한 수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 이외의 물건은 가지고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에는 전산기기(전자수첩, 공학 계산기 등)를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일반 계산기만 허용

* 일반 계산기의 범위: 사칙연산만 가능하고 부가 장치가 없는 계산기에 한함
(저장,통신,프로그래밍,그래프,문자,메모패드 등 처리 기능이 없는 계산기)

- 시험장 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및 음향기기(카세트, MP3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수험표 상에 답안 및 메모 등을 기재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필기 답안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미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모든 기재사항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0” 점 처리될 수 있으며, 사용금지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농도 등 표기상태가 불량한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중복답안을 기재하거나 잘못된 표기 시 “0” 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 ⊚

- 연필, 샤프펜, 적색펜 등으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인식되어 “0” 점 처리될 수 있으며, 농도가 옅은 사인펜으로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도 “0” 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답안지의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급수” 를 모두 표기하여야 채점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0” 점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험생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작성 오류로 “0점” 처리 주요사례>

-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빨간색 사인펜, 볼펜, 연필 등)를 사용한 경우
- 연필, 볼펜 등 다른 필기구로 답안을 표기한 후에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덧칠한 경우
- 답안 해당칸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만 표기한 경우
- 하나의 문제에 2개 이상의 답안 표기(점을 찍거나 연필, 볼펜 등으로 가답안 체크 후에 제대로 지우지 않은 경우 등)
- 오래된 수성사인펜 사용 등으로 농도가 옅게 표기된 경우
- 답안의 테두리를 벗어나 너무 크거나 넓게 표기한 경우
-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 오물 등으로 훼손한 경우

<주요 실수 유형>

번호	수험생 주요 실수 유형	판독 및 처리결과	
《미판독》 : 득점 불인정			
1	미지정펜으로 표기한 경우	연필 	해당문항 미판독
		볼펜 	
		형광펜 	
		적색볼펜 	
2	잘못된 방식으로 전부가 아닌 일부만 표기한 경우	점 	
		사선 	
		√ 	
3	숫자가 보일 정도로 농도가 옅은 사인펜으로 표기한 경우		
4	예비마킹을 하고, 다른 곳에 정답표기를 한 경우		2,4번 중복판독
			3,4번 중복판독
			2,4번 중복판독
5	부주의한 실수로 특정 문항에 두 개의 칸에 표기한 경우		3,4번 중복판독
			아래 문항 1,3번 중복판독
			위 문항 2,4번 중복판독
6	표기를 너무 크게 하여 다른 곳으로 번진 경우		아래 문항 2,3번 중복판독

Ⅲ. 실기시험 유의사항

□ (수험생 필수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 수험표 출력: 홈페이지 공지
-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구)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
 - * 만18세 이하 학생일 경우에만 학생증(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 된 것) 허용
- 허용 모바일 신분증

구분	모바일 신분증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 뱅크	KB 스타뱅킹	농협은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	○	○	○	○	○	○
모바일 운전면허증	○	○	○	○	○	○	○

□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당일 9시 20분까지 신분증, 수험표를 소지하고 공지된 시험장소로 입실 완료해야 하며, 입실 이후에는 검정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9시 20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현장 상황에 따른 응시 제한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실기시험 순번은 당일 오시는 순서대로 개별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나,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은 10:00~18:00 까지 이며, 현장상황에 의하여 시험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시험 당일 시험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 진행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험생 전원은 대기실에 입실 완료한 이후 시험을 마치기 전까지 일체의 출입을 할 수 없으며 개별 행동을 금합니다. 단, 응급 상황의 경우 관리요원의 입회하에 처리합니다.
- 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안내에 따라 곧바로 시험장 밖으로 퇴장하여야 하며, 재입실을 일체 금합니다.
- 시험장 및 대기실 내에서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태블릿, 스마트워치, 무선호출기 등), 음향기기 및 관련 교재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대기)도중에 시험 관련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여 주시고, 개인 음용수 또는 물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및 대기실 내에서는 일체 흡연을 금하며 낙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